

定 款

한국투자 Parallel유전 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 투자회사 1호(지분증권)

제정 2012.06.13
개정 2012.11.15
개정 2012.12.20
개정 2020.01.30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E241)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및 종류) ① 이 회사는 한국투자 Parallel유전 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 투자회사 1호(지분증권)(이하 “회사”라 한다)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IM Parallel Oilfield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Special Asset Fund [1](Equity)로 표기한다.

② 회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4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회사재산을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투자·운용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이다.

③ 회사는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투자하지 아니한다.

제2조(목적) 회사는 제4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전담회사의 지분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영업소 등의 설치) 회사는 본점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두며, 본점 이외의 별도의 영업소는 두지 아니한다.

제4조(직원의 고용 제한 등) 회사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한다.

제5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 이상 신문의 공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경제신문에 추가로 게재할 수 있다.

제2장 주식

제6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억주로 한다.

제7조(무액면주의 발행)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무액면으로 한다.

제8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만주로 하며, 총 발행가액은 1억원으로 한다.

제9조(최저 순자산액) 회사가 유지하여야 하는 최저 순자산액은 10억원으로 한다.

제10조(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11조(주식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회사는 회사의 설립일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고객 계좌부(이하 “투자회사주식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이하 “주주”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2. 주식의 종류 및 수

(③ (삭제))

④ 투자회사주식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2조(예탁주권의 교부) (삭제)

제13조(주권의 재교부) (삭제)

제14조(주식의 양도) ①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투자회사주식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 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주식의 이전은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5조(주식의 통장거래) 주주는 회사와 판매회사간에 체결한 “투자회사주식통장거래계약서”(총액인수 및 판매계약서에 그 내용을 포함한다)에 따라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통장(카드 등을 포함한다)으로 거래할 수 있다. <개정 2012.11.15>

제16조(자기주식의 취득 제한 등) ① 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주주의 환매청구에 의하여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3. 회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거나 합병을 의결하는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17조(주권의 상장) ① 회사는 발행된 주권을 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 후 최초증자일로부터 90일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② 이 주권의 상장, 매매, 상장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증권시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신주의 발행 등) ① 회사는 설립된 이후에는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에 등록 후 최초증자일로부터 1 개월간
2. 제 6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분배금의 범위에서 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
3. 기존 주주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신탁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4. 기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신주의 발행기간
2. 제 1 항의 발행기간내에 발행하는 신주수의 상한
3. 제 1 항의 발행기간동안 매일의 발행가액 및 주금 납입기일을 정하는 방법

③ 신주인수의 청약에 의한 신주인수인은 자체 없이 신주의 인수가액을 현금 또는 수표로 납입하여야 한다.

④ 신주인수의 청약에 의한 주식배정은 신주청약일의 익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식을 신주청약일의 익영업일(이하 “신주배정일”이라 한다)에 배정한다. 다만, 회사가 설정된 후 최초의 신주청약인 경우에는 그 신주청약일에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17시(오후 5시, 이하 “기준시간”이라 한다)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주식의 신주인수가액은 주식의 인수를 청약하는 날로부터 제3 영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일”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한다.

⑦ 신주인수의 청약은 회사의 판매회사에서 하여야 한다.

⑧ 주식의 청약 단위는 일주 단위로 한다.

제19조(신주의 효력발생시기) 회사가 설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인은 주금의 납입과 동시에 주주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제20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환매의 청구) ① 주주는 이 회사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 상장되기 이전에 한하여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1. 주주인 개인이 사망한 때 또는 주주인 법인이 법정관리 · 화의신청 · 해산하는 때
2. 제 33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제 67 조 제 4 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주가 주식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주식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자체 없이 회사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22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주식의 환매가격은 주주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10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11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회사(집합투자 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주주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10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11영업일)에 주주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 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주주에게 지급한다.

④ 환매대금은 회사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회사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회사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회사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2(환매수수료) ①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1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주주가 그 주식을 보유한 기간(당해 주식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회사재산에 편입한다.

②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익분배금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고 그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3조(환매연기)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회사(신탁업자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회사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시 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주식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주주총회에서 주식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5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식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주주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회사는 자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
 - 가.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 나. 기타 법시행령 제 257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라. 기타 법시행령 제 257 조 제 3 항에서 정하는 사항

④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회사는 환매가 연기된 주주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⑤ 회사는 회사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회사재산만으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⑦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 8 영업일 전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 9 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24조(주식의 소각) (삭제)

제25조(명의개서대리인 등)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업무를 회사와 일반사무관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임한다. 다만, 주식의 명의개서 업무를 수임한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그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② 명의개서대리인은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회사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삭제)

④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⑤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내지 제5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제2항의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처리는 같다.

제26조(주주명부) ① 회사는 주주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전자등록기관과 주주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관련법령 · 정관 · 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④ 회사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주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주주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
2. 주주가 보유한 주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회사가 주주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주주의 성명과 주권의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

⑧ 회사가 제3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 제4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주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회사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회사의 사업년도 종료에 따른 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장 주주총회

제27조(주주총회의 소집) ① 주주총회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가 소집을 요청하여 법인이사가 소집하며, 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기타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이사회에 요청하는 경우에 이사회는 1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은 후 1월 이내에 이사회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주주총회의 운영)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인이사로 한다. 다만, 법인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주주총회는 발행된 주식총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주주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의결한다. 다만, 상법 제434조의 결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하여야 한다.

제29조(의장의 질서 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및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①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의 회일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주주는 회사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참고자료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의결권 등) ① 의결권은 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

- ② 주주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주주총회의 연기)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 까지 출석한 주주의 주식총수가 발행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연기된 경우 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주주총회(이하 “연기주주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주주총회일 1주 전 까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하여 연기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연기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주주의 주식총수가 발행된 주식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출석한 주주의 주식총수로써 주주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제28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33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67조에서 정하는 정관의 변경 또는 제72조에서 정하는 회사의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주주는 주주총회의 의결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주주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에 따른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회사재산으로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주식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제34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

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35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주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그 밖에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이사 · 이사회

제36조(이사의 구분 및 수) ① 회사의 이사는 집합투자업자인 법인이사와 감독이사로 구분한다.

② 회사는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37조(감독이사의 결격사유) ① 회사는 법시행령 제2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감독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② 감독이사로 선임된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거나 법 제199조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감독이사가 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38조(이사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이사의 임기는 제65조에 의한 해산일까지로 한다.

제39조(이사의 보선)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감독이사의 인수를 결한 경우 및 법인이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결원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1. 법 제420조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해산한 경우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고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4. 법 제184조 제2항에 의한 법인이사의 업무를 폐지한 경우(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폐지한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법인이사로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40조(법인이사의 직무) ① 법인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법인이사는 3월마다 1회 이상 그 업무의 집행상황 및 자산의 운용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법인이사는 법인이사의 직무의 범위를 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자를 그 임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사는 이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통보된 자가 직무범위내에서 행한 행위는 법인이사의 행위로 본다.

제41조(감독이사의 직무) ① 감독이사는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법인이사와 신탁업자, 판매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회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법인이사와 감독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하며 회일 1일전까지 각 이사에 대하여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3조(이사회의 직무) ① 이사회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이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
2. 신주발행
3.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등과의 업무위탁계약 및 그 변경계약의 체결
4. 자산의 운용 또는 보관 등에 따르는 보수의 지급
5. 현금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6.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7. 기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이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한 사항

제44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한다.

제46조(감독이사의 보수) ① 감독이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은 주주총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다만, 회사 설립 후 최초의 이사에 대한 보수는 발기인총회에서 정한다.

② 감독이사의 보수는 1인당 월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감독이사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장 업무

제47조(투자대상 등) ①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 14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자산(이하 “해외자원개발사업”이라 한다)
 - 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방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
 - 나.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 및 시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라 한다)에 대한 출자
 - 다.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의 주식 · 지분 · 채권 · 수익권의 취득
 - 라.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의 취득
 - 마. 위험회피 외의 목적으로 투자대상자원을 기초로 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 바. 석유 · 가스 · 일반광물의 탐사 · 개발 · 생산 · 정제 · 운송 · 판매 등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의 자원개발기업의 경영권 참여를 위한 주식 및 지분의 투자
 - 사.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2.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주식관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3.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4. 법 제5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 · 에너지 · 통화나 채권 · 에너지 · 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5. 법 제5조 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채권 · 에너지 · 통화나 채권 · 에너지 · 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6.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 83 조 제 4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

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사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주식관련사채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제48조(투자한도)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한다. 다만, 법 제22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자산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야 한다.

1. 해외자원개발사업에의 투자는 회사 자본금의 50%이상으로 한다.
2. 채권 및 어음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50%미만으로 한다.
3.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회사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한다.
4.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회사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화관련장내·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제49조(자산운용의 제한)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회사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등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법시행령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서 별도로 특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회사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증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

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
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
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개정 2012.11.15>

3.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회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법시행령 제 80 조 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7. 법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제50조(자산운용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48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회사 설정일로부터 6 월간
 2. 회사 결산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결산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회사의 사업년도 종료일 이전 1 월간(사업년도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회사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 48 조 제 1 호 내지 제 2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48조 제3호 및 제49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회사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회사의 일부해산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회사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 제49조 제2호 본문,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회사 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정부융자를 받는 외에 자금차입 ·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1.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2. 제47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사용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② 정부융자금액과 자금차입금액·담보제공금액 및 채무보증금액의 합계는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자금차입·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일정 한도를 정하고, 그 구체적인 차입금액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게 할 수 있다.

제52조(자산운용지시 등) ① 회사는 회사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회사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회사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회사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회사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경우 회사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며, 자산배분명세, 취득·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 관리한다.

제53조(업무의 위탁) ① 회사는 보유자산의 운용, 보관, 발행주식의 모집 및 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할 자산운용위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는 회사의 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한다는 내용
2. 지급할 보수 및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
3. 업무수행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책임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탁업자와 체결한 자산보관위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자산의 보관 및 기타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
2. 지급할 보수 및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
3. 업무 수행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책임에 관한 내용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와 체결할 판매계약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사 발행주식의 모집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
2. 지급할 보수 및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
3. 업무 수행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책임에 관한 내용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일반사무관리위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야 한다.

1. 회사 운영에 관한 사무 및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한다는 내용
2. 지급할 보수 및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
3. 업무 수행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책임에 관한 내용

제53조의2(위탁집합투자업자의 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회사재산 중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광구의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위탁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RG 에너지자원자산운용

③ 위탁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보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와 위탁집합투자업자가 협의한 금액으로 한다.

제53조의3(해외보관대리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해외보관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 47 조에 해당하는 회사재산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업무
2. 제 1 호의 회사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업무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

제54조(보증 및 보험) 회사는 국가위험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인한 사업불능 등의 사유로 회사가 투자한 자산의 투자원금 및 이익금의 회수가 어려울 경우를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자원개발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장 계 산

제55조(사업년도) 회사의 최초사업년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이후 사업년도는 최초 사업년도 말일의 익일부터 매3개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56조(결산서류 작성 및 회계감사) ① 회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회사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사업년도 종료일
2. 회사의 해산일

③ 법인이사는 제1항의 결산서류의 승인을 위하여 이사회 개최 1주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7조(자산의 평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 제1항에 따라 회사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회사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회사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23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회사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 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회사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58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회사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회사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의 공고·개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회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개시일 전날의 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주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자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시 제59조제5항의 총액인수수수료를 최초기준가격산정시부터 회사의 존속기간 동안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대차대조표상에 반영한다.

③ 회사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회사재산에서 부담한다.

제59조(투자회사보수) ① 회사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회사보수”라 한다)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② 투자회사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년도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회사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회사 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회사의 해산
3. 위탁계약의 해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회사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회사재산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3.5 <개정 2012.11.15>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5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15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35

④ 판매회사는 회사 주식의 인수행위에 대한 대가로 회사로부터 총액인수수수료를 취득하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총인수금액의 100분의 3.5을 곱한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한다.

제60조(자산의 운용비용 등) ① 회사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하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이를 인출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회사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회사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주주명부 관리비용
5.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되는 비용
6. 회사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 비용
8. 회사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10. 차입금의 이자
11. 해외자원개발보험료
12.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이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 대한 통지 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
13. 법무, 회계 및 기술자문 등 서비스를 위한 법무법인, 회계법인 및 기술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14. 기타 회사의 모집·운영 및 자산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③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결제비용
2. 보관비용
3. 기타 부수비용 등

제61조(이익분배 등) ① 회사는 회사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사업년도 종료 후 이사회가 정하는 날에 주주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한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② 제1항의 이익분배금은 매 사업년도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그 소유 또는 질권 등록된 주식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③ 회사가 이익분배금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수, 발행시기 등 주식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62조(이익초과분배금의 지급) ① 회사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이익초과분배금”이라 한다)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분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초과분배금은 회사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익초과분배금의 지급은 매 사업년도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그 소유 또는 질권등록된 주식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이익초과분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동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일 현재 주주의 권리가 있는 자에게 이사회에서 정한 일자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동 지급일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익초과분배금은 순자산총액에서 최저순자산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내로 한다.

제63조(존속기간 이후의 잔여재산분배금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71조의 회사의 존속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점에 회사재산 중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잔여재산분배금”이라 한다)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판매회사에 인도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 받은 잔여재산분배금을 지체 없이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회사재산 중 현금화되지 아니한 자산도 잔여재산분배금에 포함하여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다.

1. 회사의 존속기간 만료일
2. 존속기간 만료후 잔여재산의 회수 또는 환가에 따른 현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날

②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분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주식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64조(분배금 등의 소멸시효) ① 회사의 이익분배금 · 이익초과분배금 또는 잔여재산분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이익분배금 · 이익초과분배금 또는 잔여재산분배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7장 해 산

제65조(해산)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금융감독원의 등록취소

② 제1항의 경우 해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02조 제1항에 관한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6조(청산인회 보수) 회사는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에게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월 100만원 이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장 보 칙

제67조(정관의 변경)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28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제 68 조 제 2 항 및 제 3 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이 회사 정관으로 정한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4. 그 밖에 주주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29 조에서 정하는 사항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1항 후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 정관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④ 주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식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2조2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정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이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2. 법 제42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투자회사재산의 보관 · 관리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184조 제4항, 법 제246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투자회사재산의 보관 · 관리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42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6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주주총회의 결의내용
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주식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주식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주주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주식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③ 회사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④ 회사는 회사의 매결산기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주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이 회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⑤ 신탁업자는 회사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90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주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3.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이 회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주주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⑦ 회사는 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회사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56조 제1항의 서류(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년도 종료일
2. 회사의 해산일

⑨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판매회사에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회계감사보고서
3. 주주총회 의사록

제70조(법규 적용 등) ①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의결, 법, 상법 및

기타 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한다.

② 이 정관에 규정된 사항 중 법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71조(존속기간) 회사의 존속기간은 회사설립일로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존속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제72조(합병) ① 회사는 법인이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합병하는 각 투자회사의 주주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회사는 다른 투자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의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증권시장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채권자가 있는 투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발기인의 성명, 주소) 회사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다음과 같다.

한국투자신탁운용(주) 대표이사 조홍래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